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案)

■ 일정 안내

1. 투표일정 : 2019.1.7.(월)~1.8.(화)

2. 투표방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 K-voting은 최근 노동계, 시민단체, 국회 등 많은 곳에서 사용을 통해 검증 됨.

3. 투표대상

2018년 12월 기준 CHECK-OFF 된 조합원 휴대폰 번호로 투표안건 발송

4. 잠정합의안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 임금 및 단체협약 등에 관한 잠정합의안(案)

1. 임금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18년 임금: 2018년 연봉의 5% 자기계발비지급(1월 중 지급) - 2019년 임금 4% 인상 												
2. 임금체계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중식대+자가운전보조금+기타수당+시간외 수당(월 11시간 분) ※ 기존 월 40시간(일 2시간)의 고정시간외수당을 월11시간(일 30분)으로 변경. 평일 17시30분 이후 시간외 수당 청구(평일 특근비 폐지) - 임금피크제 도입 및 통합 - 구)미래에셋증권: 문화체육비/Refresh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 												
3. 임금피크제	<p>대상자: 만 55세 이상의 정규직 직원은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정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347 1594 1359 1765"> <thead> <tr> <th>선택</th> <th>대상자 선택 案</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임금피크 적용</td> <td>80%-70%-60%-50%-40%</td> </tr> <tr> <td>2</td> <td>명예퇴직</td> <td>월 급여 24개월분 + 재취업지원(월 급여 6개월분)</td> </tr> <tr> <td>3</td> <td>주식상담역 전환</td> <td>월 급여 18개월분 + 학자금(5년) or 3,000만원</td> </tr> </tbody> </table> <p>※임금피크 적용 대상 자 중 직전 본인 연봉 기준 BEP 2배 이상(지점) 이거나, 인사고과 B0 이상(본사)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임금감액 적용을 유예한다.</p> <p>※ 단, 이미 임금피크 연령이 지난 직원의 경우에는 잔여 정년을 고려하여 적용함</p>	선택	대상자 선택 案	내 용	1	임금피크 적용	80%-70%-60%-50%-40%	2	명예퇴직	월 급여 24개월분 + 재취업지원(월 급여 6개월분)	3	주식상담역 전환	월 급여 18개월분 + 학자금(5년) or 3,000만원
선택	대상자 선택 案	내 용											
1	임금피크 적용	80%-70%-60%-50%-40%											
2	명예퇴직	월 급여 24개월분 + 재취업지원(월 급여 6개월분)											
3	주식상담역 전환	월 급여 18개월분 + 학자금(5년) or 3,000만원											

4.고용안정대책	- ‘정리해고 등과 같은 고용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명문화									
5. 교과 조정을 변경	<table border="1" data-bbox="347 286 1359 407"> <thead> <tr> <th>구분</th> <th>기존</th> <th>변경</th> </tr> </thead> <tbody> <tr> <td>C</td> <td>-1%</td> <td>-3%</td> </tr> <tr> <td>D</td> <td>-3%</td> <td>-5%</td> </tr> </tbody> </table> <p data-bbox="347 412 1401 551"> - 매니저이하 교과적용률은 위 교과 1/2 적용 - C,D 교과 적용율은 2019년에 한하여 적용하며 추후 재협의 한다. - 기타 교과 등급별 비중 등 교과와 관련된 사항 및 사유는 유지 </p>	구분	기존	변경	C	-1%	-3%	D	-3%	-5%
구분	기존	변경								
C	-1%	-3%								
D	-3%	-5%								

■ 잠정합의 세부안(案)

1. 임금인상

□ 2017,18년 임금 : 2018년 연봉의 5% 자기계발비 지급 (1월 중 지급 예정)

-대상자 : 2018년 12월 현재 재직자 / 정규직, 일반계약직

(2018년 3개월 이상 실근무자 限)

2018년도 중에 계열사 전직, 이사대우-PB이사 승진, 계약형태 변경,

기타 별도 사유가 존재하는 등 지급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근무일수 등을

고려하여 지급

□ 2019년 임금 : 4% 인상

-대상자 : 정규직, 일반계약직,

※ 회사는 상담직(CS직군)의 경우 상기 수준에 준하는 기준 적용 예정

2. 임금체계 통합

□ 임금체계 통합

- 기본급 (70%수준) +중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월 11시간분의 시간외 수당 +기타수당

- 구)대우증권 : 기본급 상승으로 인한 연차수당, 평일특근수당, 휴일특근수당 증대

- 기타수당 : 시간외근로수당이 월 평균 40시간에서 11시간으로 적용됨에 따라 수당보전을 위해 신설한 급여 항목

- 정규 근무시간 08~17시

- 기존 월 40시간(일 2시간)의 고정시간외수당을 월 11시간(일 30분)으로 변경

- 평일 오후 17시 30분부터 시간외 수당 청구

(특근 교통비 폐지, 시스템 개발 이후 2월부터 적용)

□ 구)미래에셋증권 : 문화체육비/Refresh비 연봉에 포함(직위별 150~246만원)

- 문화체육비(사원 5만/중견 8만/대리이상 13만원) 와 Refresh 지원비 연 90만원을 합한 금액을 2019년부터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
- 대상자 : 정규직, 일반계약직

※직위별 초임(참고)

구분	직위	① 현행	② 조정금액	③ 4%인상분	변경 (① + ② + ③)
일반직	수석매니저	85,782,000	2,460,000	3,529,000	91,771,000
	선임매니저	68,637,000	2,460,000	2,843,000	73,940,000
	매니저 (매니저J)	50,000,000 (45,000,000)	2,460,000 (1,860,000)	2,098,000 (1,874,000)	54,558,000 (48,734,000)
업무직	매니저(A)	45,000,000	1,860,000	1,874,000	48,734,000
	대리	30,000,000	1,500,000	1,260,000	32,760,000

※조정금액 : 구)미래에셋증권 직원 및 2017년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 될 리플레쉬비 + 문화체육비
 구)대우증권 직원은 기 적용 받고 있음

※상기 변경된 초임은 2019년 연봉부터 적용

3. 임금피크제

- 임금피크 연령(만 55세) 도달 시 임금피크 적용, 명예퇴직, 주식 상당액 전환 중 택 1
- 만 55세부터 임금피크 적용 (80% - 70% - 60% - 50% - 40%)
 - 직전연도 연 BEP 2배(지점) 또는 고과 Bo(본사) 이상 직원 당해 연도 임금 삭감률 적용 유예 (단, 성과 미달 시 당해 연도 임금 삭감률 적용)
-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임금 인상, 고과 적용률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 근무시간은 09~16시까지로 한다.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임금피크 대상자 명예퇴직 및 주식 상담역 조건

구분	조건
명예퇴직	월봉 24개월 + 6개월(재취업 지원금)
주식상담역	월봉 18개월 + 학자금(5년 보장) 혹은 3,000만원

※ 단, 이미 임금피크 연령이 지난 직원의 경우에는 잔여 정년을 고려하여 적용함.

4. 고용안정에 따른 대책

- ‘정리해고 등과 같은 고용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합의문 명문화

5. 고과조정을 변경(2019년에 限 함)

- 고과조정을 변경

구분	S	A+	A0	B+	B0	C	D
수석 /선임매니저	5	4	3	1	0	-3	-5
매니저 / 업무직	2.5	2	1.5	0.5	0	-1.5	-2.5
인원 비중	5%	10%	20%	30%	20%	10%	5%

※ 상기 고과적용률은 2019년도 고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추후 재협의

※ 기타 고과 등급별 비중 등 고과와 관련된 사항 및 사규는 유지

6. 복지정책(추후 협의 사항)

- 복지 통합

- 주택대출 기준 통합 , □ 장기근속포상 통합
- 생일기념선물지급 통합 , □ 유급 출산 휴가 조건 , □ 재해부조금 지원

- 복지 확대

- 육아휴직 확대 , □ 종합검진 및 의료비 보조 확대
- 유치원 및 출산 보조금

*상기 안건 포함한 복지정책은 2019년부터 계속 협의 예정